

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 규정

제정 2011. 5. 12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과 공동학위에 관한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원(이하 “교류대학원”이라 한다)간의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공동학위라 함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(이하 “두 대학원”라 한다)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본 대학원의 학위만 수여하거나 두 대학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거나 두 대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과의 복수학위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체결에 의하여 공동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지원자격 및 선발절차) 교류대학원 학생의 지원 자격은 협정에 의하되 본 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선발절차와 인원) ① 두 대학원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 된 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 교류대학의 정원 외 재학생으로 인정한다.

② 선발인원은 교류대학원과 협의하여 선발한다.

제6조(입학취소) 학생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해 입학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지도교수는 대학원에 입학취소를 제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수업연한 및 신분) ① 수업연한은 석사학위는 2년 4학기 이상으로 한다. 단, 외국대학의 학칙 상 3학기가 가능 할 경우 해외 수업 시 적용할 수 있다.

② 공동학위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소속 대학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8조(등록 및 납입금) ① 공동학위 학생은 두 대학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공동학위 학생의 납입금은 두 대학원간의 협정에 의한다.

제9조(교류학생의 임무) ① 공동학위학생은 교류기간 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이수 또는 학위논문 관련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에 제출하고 그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공동학위학생은 교류국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요건 및 기타 요건, 교류대학원의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 (과정 이수) 공동학위 학생은 두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성적처리 및 학점인정) 두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각 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, 교류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서는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.

제12조 (졸업요건) ①공동학위학생은 두 대학원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졸업 관련 사항은 두 대학원의 학칙에 준하여 협정에 의한다.

제13조 (학위수여) 두 대학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공동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는 두 대학원 간 협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원과 상호협의를 따른다.

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 규정 1-2-1-7~2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